

검 토 의 견 서

- 일 시 : 2021. 3. 3.(수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(2164)

평 생 교 육 국

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164호)

- 문장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64호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감면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청소년시설을 비롯한 체육시설·미술관 등은 개별 근거 조례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, 각 조례에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이 명시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.
- 따라서, 동 조례개정안이 근거가 되어 각 시설 조례가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3. 3.

평생교육국장 이대현